

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02년 9월 2일
- 나. 발 의 자 : 허 정 민 의원외 15인 발의
- 다. 회부일자 : 2002년 9월 3일
- 라. 상정일자 : 2002년 9월 4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

- 제21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(제1차) : 허 정 민 의원
- 경제건설위원회 : 허 정 민 의원

나. 개정이유

- 도시의 개발 및 여건의 변동에 따른 학교용지의 장·단기 수급과 도시 계획(변경)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의 속기록 보존 등 보완 조치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음.

다. 주요골자
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중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관계자 참여보장 (안 제2조 제3항)
- 위원회 회의개최시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한다로 규정 (안 제28조 제3항)
-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(안 제38조 제4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4. 위원회 활동

-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(2002. 9. 4)
 -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답변
-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(2002. 9. 5)
 - 심사결정

5. 토론요지

-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·상업기능·공업기능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립·집행되고 있는 바,
- 최근 도시개발의 여건 변동시 새로운 대단위 주거단지(아파트 등) 도시계획(변경)안을 입안과정시 학교부지 수급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을 당연직으로 교육청관계자를 참여시키며,
- 또한 회의진행의 정확한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

【원안가결】